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이전

3) 행정규제 :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육군훈련소령」의 개정)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관급장교”를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다.

제2조(「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의 개정)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령관 및”을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로, “장성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으로 한다.

제3조(「해군작전사령부령」의 개정)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령관·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해군잠수함사령부령」의 개정)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領官級) 장교”를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다.

제5조(「해군함대령」의 개정)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를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다.

제6조(「공군작전사령부령」의 개정)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령관·부사령관 및”을 “사령관·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로, “장성급(將星級)장교”를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육군훈련소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참모장) ① (생략)	제4조(참모장) ① (현행과 같음)
②참모장은 육군의 <u>영관급장교</u> 로 보한다.	②----- <u>장성급 장교</u> <u>또는 영관급 장교</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생략) ② <u>사령관</u> 및 참모장은 육군의 <u>장성급</u> 장교로 보한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u> <u>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u>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생략)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u>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u>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사령관·부사령관은 <u>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u>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 등) ① (생략)	제3조(사령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령관과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u>	② <u>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u>

해군함대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② (생략) ③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 급 장교----.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생략) ② <u>사령관 · 부사령관 및 참모장</u> 은 공군의 <u>장성급(將星級)장교</u> 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령관 ·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u> <u>-----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62